##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7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윤준병・박민규・주철현

조계원 • 정동영 • 박홍배

이원택 · 박희승 · 이춘석

허 영 · 김우영 · 김태선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· 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 용·관리하는 특별회계임.

한편,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,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##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(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	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		
별회계법 부칙	별회계법 부칙		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25년</u>	제2조(유효기간) <u>2030년</u> -		
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<u>.</u>		